

(우) 04427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46길 37 [http://www.kma.org]/전화(02)6350-6575 / 전송(02)790-8911  
보험국장 김기성(6574) / 보험정책팀장 백영기(6581) / 팀원 김철욱(6575) / E-mail: kma6350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821-6852호

시행일자 2024. 9. 12.

수 신 수신처 참조

참 조

제 목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

1.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령 제1055호(2024. 9. 12.)

3. 상기와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 바,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주요 내용

- 경증응급환자 및 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대형병원의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을 100분의 90으로 상향함
- 시행일 : 2024. 9. 13.

붙임 :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」 개정문 1부. 끝.

대한의사협회장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



수신처 : 각 시도 의사회장, 대한의학회장(26개 전문학회),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, 각과  
개원의협의회회장, 대한병원장협의회회장, 한국여자의사회장